

의안번호	2211904
의 퇴 인	이재정 의원
회 답 일	2025. 8. 22.
추계번호	25C41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 제1항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1)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u>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u> ※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할 대상 변경 (현행)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개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 삭제)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의2제1항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감염병 위기상황 시 의료·방역물품 지급 대상 확대(안 제49조의2제1항)

- 보건복지부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료·방역물품을 전달하였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의료·방역물품 지급을 위하여 2020년 178억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33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급과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코로나 19 대응 의료·방역물품 지급 내역'을 참고

- 개정안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위기경보 발령 시점과 재난 종류 및 규모, 의료·방역물품의 종류, 대상자 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nabo.go.kr

[참고자료]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물품 지급 내역

1. 감염병위기상황에 의료·방역물품 지급 내역(2020, 2021년)

지급시기 (구분)	지원대상	물품	대상	예산
2020년 (1차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18개소, 3,877명	56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9개소, 1,132명	11백만원
	어린이집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37,400개소, 169,473명	3,281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4,217개소, 12,066명	321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837개소, 2,313명	63백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80개소, 450명	13백만원
	경로당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66,864개소, 80,236명	4,306백만원
	노안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884개소, 40,189명	835백만원
	양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4개소, 510명	9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250개소, 2,815명	34백만원
	드림스타트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229개소, 1,926명	26백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48개소, 1,139명	16백만원
2020년 (2차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18개소, 7,755명	145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9개소, 2,264명	37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4,217개소, 24,132명	59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837개소, 4,626명	116백만원

지급시기 (구분)	지원대상	물 품	대 상	예 산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80개소, 900명	24백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884개소, 80,378명	1,760백만원
	양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4개소, 1,020명	20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250개소, 5,630명	98백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48개소, 2,278명	42백만원
2020년 (3차 지원)	어린이집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소독용품, 체온계	3만8천개소, 142만명	6,033백만원
2021년 (감염병 확산 방지 체계 구축)	저소득층	마스크	440만장	1,400백만원
2021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6,948만장	31,300백만원
2021년 (목욕장업 마스크 지원)	전국 목욕장	마스크	620만장	35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